##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05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9.

발 의 자:이연희・임미애・이기헌

김한규 • 박홍배 • 최기상

박상혁 • 홍기원 • 허종식

맹성규 · 김남희 · 손명수

복기왕 • 한민수 • 김정호

황 희 · 윤후덕 · 이정문

한준호 • 문진석 • 민형배

윤종군 의원(2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"경력단절"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,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, 가사, 간병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,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, 나아가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.

이에 "경력단절여성"의 용어를 "경력보유여성"으로 변경하여 경력보

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##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5항 중 "경력단절여성"을 "경력보유여성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4조(경제활동 참여) ① ~ ④	제24조(경제활동 참여) ① ~ ④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	⑤		
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			
<u> 경력단절여성</u> 등의 경제활동	<u> 경력보유여성</u>		
참여를 위하여 행정적 • 재정적			
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			
여야 한다.		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		